

부령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2. 개별기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	----	------

② 2. 개별기준 제4호 가목을 삭제하고 나, 다 목을 가, 나 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1.~3 생략				1.~ 3 생략			
<신 설>				4.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 제1항제5호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지정 취소	<삭 제>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u>다.</u>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 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 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 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u>나.</u>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 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 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 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단	
연 락 처	(044) 204 - 7280